

1. 개정이유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 집행과 법령 문구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개선하여 발급 및 재발급 효율성을 강화하고 영문 서식을 추가하여 민간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 명확화(별표 3 개정)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두는 해당 부두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개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고 신규 부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부두의 평균 조정률을 적용하여 안벽임대료를 산출하는 행정 집행기준에 맞게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 관련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 고시 주기 기산점 조정(부칙 제2조)

부두운영회사 안벽임대료의 적정 수준으로의 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안벽가액 및 조정률을 5년 마다 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4년에 표준안벽가액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률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차기연도인

2025년도에 표준안백가액 및 조정률을 재조정하고자 관련 고시 주기
기산점을 2025년으로 조정함

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 개선(제8호 서식 개정 및 제8호의2 서식 신설)

검수사등 자격증 서식을 카드 형태에서 a4 종이 형태로 변경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문 서식에 더하여 영문 서식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개정본분,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정~~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등~~록~~표”를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자~~는~~”을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는~~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일~~시~~적”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로,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산출식란 중 “평~~균~~ 조~~정~~률”을 “조~~정~~률”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평~~균~~ 조~~정~~률”을 “조~~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 쪽)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대 표 자(성 명)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 업 의 종 류				
⑥자 본 금				
⑦항 만 명(사 업 구 역)				
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 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 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구 비 서 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 수 료
	법인인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재 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 당합니다)	수입인지 1만원
	개인인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 본(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등록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 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만 해당함)
: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 호

○○○ 자격증

성명:

생년월일:

시험 합격일: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No.

○ ○ ○ **Certificate**

Name:

Birth Date:

Qualifying Examination Pass Date:

This Certificate is issued by the law of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7 (2)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20

Minister of Ocean
and Fisheries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 쪽)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 선박연료공급업 · 선박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대 표 자(성 명)		③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사 업 의 종 류				
⑥자 본 금				
⑦항 만 명(사 업 구 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 선박연료공급업 · 선박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 · 도지사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확인사항	수 수 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4. 00. 00.> (앞 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등록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16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신고 연월일:

항만명(사업구역):

유의사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로 변경하고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미등록 향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신고번호: 호						
신고인	② 상호(명칭)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등록 향만명					
신고내용	⑧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향만			⑨ 일시적 영업기간		
	⑩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					
「향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미등록 향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일일일

53337-43111민
97.6.27. 승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개정에 따른 안벽임대료의 표준안벽가액과 조정률의
변경 고시 주기는 2025년도부터 개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 <u>제출해야</u>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 <u>경우: 정관</u>
가. 정관	<삭 제>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삭 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② ----- ----- ----- ----- ----- ----- ----- ----- ----- ----- ----- <u>해당한다</u>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

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
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
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
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 확인해야

-----.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재
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
다) 또는 주민등록표 --- 않으
면 --- 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

--- 자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 미등록 항만에서
의 일시적 -----
----- 제출해야 -----.

② -----
-----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
고서-----

----- 미등록 항만에
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
증--- 발급해야 -----
-----.